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개정이유

2003. 7. 1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업무를 새로이 분장함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정정하여 지정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-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

3. 주요골자

- 기금출납원을 여성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함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건은

-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직제개편에 맞게 업무분장을 조정한 일련의 조치사항이며,
- 특히 2003. 7. 1 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

- 위 조례 개정을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